

<요 약>

1. 연구 배경 및 목적

- 최근 재정경제부에서는 법무부와 공동으로 제조물책임법(Product Liability Law)을 입법하고, 2002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있음.
 - 제조물책임(products liability)이란 민법의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여 제조업자의 고의·과실에 관계없이 제조물에 결함이 있을 경우, 제조자에게 특별한 엄격책임(strict liability)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제품의 결함이 원인이 되어 그 제품의 사용자 또는 제3자에게 생명·신체 및 재산에 손해를 준 경우에 그 제품의 제조업자·판매업자 등이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말함.

- 비록 제조물책임법의 적용 범위에서 부동산이 제외되었으나, 건설업자는 가공을 행한 자로서 제조물책임을 부과받을 수 있으며, 소비자와 관련된 분쟁에서도 제조물책임법의 제정 취지가 반영될 확률도 있음.
 - 건축물을 구성하고 있는 건재·설비 등에 대하여는 직접 제조물책임이 적용됨.

- 건설업체 및 건재·설비 업체는 현재에도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의거하여 부실공사나 안전사고가 발생할 시 과중한 처벌을 받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제조물책임법의 제정으로 인하여 타 업종 이상으로 높은 부담을 안게 되었다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건설업계와 건재·설비업계에서는 이러한 PL리스크를 인식하여 PL책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밀도있는 대응 체제를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제조물책임법의 내용을 고찰하고, 동 법의 제정에 의하여 건설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파급 효과를 분석하는 한편, 건설업계 및 건재·설비업계의 대응 방안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함.

2. 정부의 제조물책임법안의 주요 내용

- 제조물책임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제조물은 “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으로 정의하고 있음.

- 그 동안 재정경제부의 제조물책임법 입법 과정에서 공동주택 등 분양 건축물을 제조물 책임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킬 것인가에 대하여 많은 논의가 있었으며, 국회 통과 과정에서 분양 건축물을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다음과 같은 논지에 의거, 부동산은 제외된 바 있음.
 - 제조물책임법을 적용할 수 있는 대상은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가 적합한 제품이나, 건축물이란 본래 도급 계약에 근거한 개별 생산품이 일반적임.
 - 일반 제조물은 생산 과정에서 유통에 이르기까지 제3자나 소비자의 감시가 불가능하나, 건축물이란 생산 단계에서 다양한 제3자의 감시가 존재함.
 - 부동산은 제조물에서는 볼 수 없는 하자담보책임이 존재함.
 - 건축물이란 일정한 수명이 있으며, 장기적으로 노후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소비자 및 유지관리자에게도 안전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고 있음.
 - 건축물은 다종 다양하여 제조물 책임 대상의 한계를 정하기 어려움.
 - 건축물이란 생산 단계에서 설계자와 시공자, 구조기술자, 감리자, 하도급업자, 자재공급업자 및 발주자 등이 각각 동등한 입장에서 계약에 근거하여 생산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업자만을 제조업자로 보는 것은 불합리함.
 - 일반 제조물과 달리 건축물은 건설업자와 소비자간에 명확한 계약 관계가 있으며,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계약 책임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함.
 - 제조물책임법에 공동주택을 포함하지 않더라도 건축물에 사용된 건자재 및 설비부품 등은 제조물책임을 적용받고 있음.
 - 제조물책임법을 이미 제정·시행하고 있는 일본 등 30여개국에서는 서비스와 전기 등의 무체물 및 공동주택 등과 같은 부동산에 대하여는 통상 계약 관계에 의해 처리가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제조물책임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 제조물책임법의 제조자의 범위는 “제조물의 제조·가공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

또는 “제조물에 성명·상호·상표 기타 식별가능한 기호 등을 사용하여 자신을 제조물의 제조·가공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로 표시한 자 또는 제조물의 제조·가공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로 오인시킬 수 있는 표시를 한 자”임.

- 결함이란 당해 제조물의 특성, 통상 예견되는(foreseeable) 사용 형태, 제조물이 인도된 시기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 제조물이 통상적으로 지녀야 하는 안전성을 결하고 있는 것을 의미함.
 - 결함의 유형에는 제조 결함, 설계 결함, 경고 결함이 있는데, 특히, 경고·표시상의 결함은 설계상의 결함, 제조상의 결함에 비하여 소비자가 그 결함을 주장·입증하기 쉽다는 특성이 있음.
- 제조물에 결함이 있는 경우에도 제조자 등이 당해 제조물을 유통시킨 시점에는 결함이 없었다는 사실, 혹은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한 때의 과학기술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 등을 증명할 수 있다면, 제조자는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않음.
- 제조물책임의 책임 존속기간은 피해자가 손해·결함 및 제조자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로부터 3년, 제조물 공급 시점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하게 됨.

3. 결함 건축물에 의한 소비자 피해와 건설업자의 책임 분석

(1) 민법과 제조물책임법의 상위점

- 건설공사에 있어서 소비자의 피해에 대한 민법상의 책임 추궁 수단으로는 불법행위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이 대표적임. 이외에 불법행위책임의 일종으로서 사용자책임과 토지공작물책임, 그리고 계약 책임의 일종으로서 고의·과실의 유무에 관계없이 성립하는 하자담보책임 등이 있음.

- 제조물책임은 제품의 결함이 원인이 되어 인적 손해나 물적 손해가 발생했을 때, 제조업자의 ‘과실’이라는 주관적 요건을 제조물의 ‘결함’이라는 객관적 요건으로 전환하여 피해자의 손해 구제를 용이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음.
 -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에 의한 손해 배상의 경우, 피해자는 제조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하여야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는데, 피해자의 입장에서 제조자의 과실을 입증한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점을 해소하려는 것임.
- 일부에서는 제조물책임을 하자담보책임 요건을 강화한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도 있는데, 제조물책임이란 제품 자체에 발생한 손해는 책임 대상이 아니며, 그 제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 혹은 제3자에게 확대된 손해(인명, 신체, 재산에 발생한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부과되는 책임임.
 - 하자담보책임이란 제조물(건축물) 자체의 하자나 결함에 대한 보수 책임을 말함.
- 민법상의 채무불이행책임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계약관계에 있는 경우에 발생하나, 제조물책임은 결함 제품의 제조업자(가해자)와 그 결함에 의한 피해자 사이에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효력이 발생함.

(2) 민법 및 제조물책임법에 의한 소비자 피해 구제 절차

- 아파트이나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점유자이용자)이 건축물의 결함에 의하여 손해를 받은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인 시공자나 설계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추궁할 수 있음.
 - 또한, 설치 이전에 이미 결함이 있었던 전자재나 냉·난방기기 등의 동산에 대하여는 가해자인 건재설비기기 제조업자에 대하여 제조물책임을 추궁할 수 있음.
- 피해자가 분양업자(발주자)로부터 아파트나 임대주택을 구입한 경우에는 피해자는 발주자에 대하여 매매계약상의 계약 책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할 수 있음.
 - 발주자는 시공자나 설계자에 대하여 계약에서 정한 품질이 확보되지 않은 것에 대한 계약 책임을 추궁하게 됨.

- 오피스빌딩이나 학교·백화점·호텔 등에서 공작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회사원이나 학생 등 특정한 이용자나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건축물의 점유자(소유자 내지는 임차인 등)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 혹은 토지공작물책임을 추궁하게 됨.
 - 건축물의 점유자는 만약 발주자로부터 건축물을 구입했다면, 발주자에게 계약 책임이나 불법행위책임을 추궁하고, 발주자는 다시 시공자나 설계자에 대하여 계약에서 정한 품질이 확보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계약 책임을 추궁하게 됨.
 - 발주자가 건축물의 소유자인 경우에는 시공자나 설계자에 대하여 계약에서 정한 품질이 확보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계약 책임을 추궁함.
 - 또한, 피해를 받은 이용자는 직접 계약 관계가 없는 시공자나 설계자에 대하여도 불법행위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가능함.

4. 건설업의 제조물책임 대응 방안

- 제조물책임법의 적용 대상에서 부동산이 제외되었으나, 건설업체가 제조물책임으로부터 자유롭다고는 할 수 없음.
 - 일반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는 설치(공사)밖에 하지 않았다면, 민법상의 책임밖에 없으나, 가공을 한 행위는 제조자에 포함되고 제조물책임을 부과받게 됨.
 - 건설업자가 직접 내·외장재, 설비, 위생도기 등을 외국에서 수입하여 시공하였다면, 그 건재·설비의 결함에 의하여 소비자 혹은 제3자에게 확대된 손해에 대하여는 수입업자인 건설업자에게 제조물책임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음.
 - 건축물을 포함한 부동산에 관한 분쟁 처리는 민사 소송에 의한 계약책임이나 불법행위책임을 적용하여 해결해야 하나, 실질적으로는 제조물책임법 제정 취지를 반영한 해결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음.
- 건설공사에는 많은 주체가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사고 원인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하여는 발주자, 설계자(공사 감리자), 시공자(일반건설업자 등) 등의 각 주체가 각각 부과된 역할과 책임을 계약서 등으로 명확히 해 두는 것이 필요함.

- PL책임이 제기되었을 경우 시공 부분에 결함이 없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설계도서, 시방서, 견적서, 부품제조업자의 납품서, 발주자의 주문서·지시서 등의 다양한 문서를 시공 안건마다 정리하여 보관할 필요가 있음.
- 건설업체는 자재·설비 공급업체와 계약시, 제조물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에서 정하도록 하고, 자재·설비 공급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PL보험 가입을 거래조건으로 하는 것도 유효함.
- 분양업자나 건설업자는 주요 설비·부품의 제조업자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표시 제조업자로서 오인될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함.
 - 건축물의 매도시에는 이용자에게 건축물이나 설비의 안전한 사용방법을 인지시키고,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도록 안전 및 경고 표시를 철저히 해야 함.
 - 건재나 설비기기 제조업자로부터 취급설명서를 전달받았을 경우에는 이를 건축주에게 인도하고, 건축주의 확인을 받아놓는 것이 필요함.
- 클레임 창구를 활성화하여 소비자의 클레임에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함.
 - PL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신속히 대응하여 손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하고, 사고 원인을 분석하여 동일하거나 혹은 유사한 결함을 내재하고 있는 건축물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보수하고, 이용자에게 인지시키는 등의 대응이 필요함.
 - 특히, 주택의 PL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하여는 업계 공동으로 주택PL센터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5. 건재·설비업의 제조물책임 대응 방안

(1) 건재·설비업계의 파급 효과

- 부동산은 제조물책임법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되었으나, 부동산을 구성하는 건재·부재·설비는 제조물책임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건재·설비업계는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됨.

- 제품의 안전성을 향상시키는데 더 높은 코스트가 필요하게 되며, 제조물책임 소송에 대비한 인력 충원, PL보험료등 새로운 원가 상승 요인을 안게 됨.
 - 또한, 신제품 개발 등 제품 혁신에 대한 노력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음.
- 업종별로 보면, 엘리베이터, 건설기계, 창호류, 바닥재, 방수재료 제조업자의 경우, 면밀한 대응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음.
- 특히 승강기나 건설기계의 경우, 주로 사용중에 유지관리나 이용을 잘못하여 사고가 발생하게 되나, PL소송이 발생하게 되면, 제조업자는 인도시 아무런 하자가 없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해야 하므로 제조출하단계에서 면밀한 검사 체제를 확립하고, 증빙 자료를 확보해 놓는 등의 대응이 필요함.
- 업체 규모별로 보면, 중소기업의 경우 제조물책임에 대한 인식이 미흡할 뿐 아니라, 제조물책임에 대비하기 위한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투자여력도 부족하기 때문에 더 큰 영향을 받게 될 전망이다.
- 대기업에서는 디자인이나 승인도 방식의 부품 발주를 대여도 방식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고, 더 나아가 발주품을 내부 생산으로 전환시킬 우려도 있음.
 - 도급자 또는 모기업에서 제품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검사 기준을 강화할 경우, 경영애로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음.
- 제조물책임에 의하여 기업에 생기는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로서는 피해자에 대한 배상금지불, 소송 비용, 변호사 비용, 분쟁 해결 비용 등이 있음.
- 또한, 간접적 손해로서는 손해의 확대 방지에 필요한 비용(리콜 비용 등)과 제품의 제조 중지나 영업 정지 등에 따른 이익 상실이 생길 가능성이 있으며, 나아가 소비자의 신용을 저하시켜 경제적으로 계량할 수 없는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음.

(2) 건재설비업의 대응 방안

- 지금까지 건재설비 제조업자는 건설회사 등에 단지 제품을 판매할 뿐이었으나,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된 이후로는 최종 소비자(end user)도 시야에 넣어 판매나 개발을 하는

것이 필요함.

- 제품의 설계·제조에 있어서는 관련 법률, KS규격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최소한의 안전 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필요함.
 - 제품의 구성 부품 가운데, 안전에 위해가 큰 주요 부품은 수명이 긴 재료를 사용하고, 손모된 경우에는 쉽게 교환할 수 있는 구조로 해 두는 것이 필요함.
- 제조 단계에서는 품질관리 부문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품질관리 체크리스트와 매뉴얼 등을 제정보완하고, 제조 및 검사기록을 보존하는 것이 필요함.
 -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클레임을 설계·제조 부문에 피드백하는 것이 중요함.
- 제품의 시공업자, 나아가 구체를 시공하는 전문건설업자와 긴밀한 연락을 취하고, 시공 관리에 대한 매뉴얼, 특히 결함 공사의 실례를 공표하고, 정확한 시공법의 보급에 노력해야 함.
- 경고표시 결함에 의한 PL책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용 및 폐기에 있어서 제품의 위험성에 대하여 경고하고, 제품의 오용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품설명서’를 작성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제품에 ‘경고라벨’을 부착할 필요가 있음.
- 완제품 제조업자는 부품이나 원재료를 타사로부터 구입하고 있는 경우, 부품이나 원재료의 제조업자(외주선)에 대하여 원재료나 부품의 품질 기준을 설정하고, 납입시에 품질검사를 철저히 하는 한편, PL소송이 제기되었을 때의 상호 협력, 소송 비용이나 손해배상금의 분담 의무를 계약서에서 명확히 해 두는 것이 필요함.
 - 부품을 납품하는 하도급 업체나 자회사 측에서는 완제품의 위탁 제조나 부품 제조에 있어 도급자의 지시가 있었던 경우에는 도급자에게 책임이 있으므로 계약서 등에서 책임 관계를 명확히 해 둘 필요가 있음.
- 제품 개발과 관련된 서류, 설계 도면, 품질 관리 기록 등은 PL소송 등이 발생했을 때 제품에 결함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제품의 개발 단계에서 제조판매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문서화하고 보관하는 것이 필요함.

- ISO 9000 인증 취득 등을 통하여 설계도면과 사양서대로 제조가 될 수 있도록 업무 매뉴얼을 정비하고, 체계적인 품질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 ISO 인증을 취득하고 있는 기업에서는 자사의 제품이 안정적인 품질관리 시스템에 의거하여 제조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고객이 '결함'이나 '과실'의 존재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별도의 증거에 의존해야 할 가능성이 높음.

- PL사고가 발생하면, 건재·설비업자가 부담하게 되는 손해 배상금이 거액으로 되는 경우가 많고, 더구나 일시에 지출해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험 등을 통하여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방법을 미리 검토하여 둘 필요가 있음.